

기안용지

(전화번호 722-7101)

전결규정

조회항
전결사항

1982. 3.

기호
번호

인사 202-

처리기간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
조
기
관

인사과장

보임1계장

기안책임자

이 천구 82. 3.

경
유
수
신
함
조

수신처 참조

제
목

별첨작 공무원 인사

1. 별첨작 공무원은 특령법과 행을 위하여 특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특별한 절차에 의거 특별 직위에

임용한 자이므로 과온 직위로의 전보 발령은 굳가 하며

징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호

에 의거해 처리하기 바람.

2. 도봉구 총무 215-4072 (82. 2. 26) 호 인사내선은

본 치적을 참조하기 바람.

수신처 : 서구 1-17 해당기관

063

시 장

협

조

금지

통

검열

1982. 3. 8.

서울특별시
상수동과제

정서

관인

발송

(답) (임재 202-1527, 1971. 6. 10.)
1. 세종부 214-10458(71. 6. 9.)에 대한
의문입니다.

2. 키문의 경우

중앙보급사무소의 분소(분소장: 서기관)
및 등소의 과(課) 제도는 위부의 부령에서
권위상 설치한 업무분장에 불과하며 경부조

처벌 제2조, 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과 기관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최저 단위 보조기관과는 별 수 있으므로, 이는 회부의 우강연금소의 본소와 그 조직적 유사한 비관으로서 동일 본소내에서의 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7. 벌점직공무원 전보에 대한 질의

(무) (국토포함위장과)

당천은 경계상 대부분 법정직공무원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는 이를 법정직공무원에게도 친보의 필요성이 절실히나 관계법령의 관련자와의 다음 사항을 친의하오니 회식등의 소식이 바랍니다.

1. 개인적 공무원의 경우에도 전보가 가능
하지 일부.

2. 만약 비정기 근무원의 진보가 가능하다면 부정석근무원인사규정 제4조에 의거 일반직근무원의 전보경차에 충당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징차금 벌금어야 될 것인지 여부.

3. 단약 및 경적 공무원의 전보는 가능하나 일반적의 험용전차에 의거할 수 없거나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적 공무원의 동일직

집내에서의 보직법경의 절차는 여하.

(단) (일자) 202-2032, 1971. 8. 12.)

1. 종루 290-521(71. 7. 12.)에 대한 최
신임.

38. 정원개정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한 질의

(무) (국토통일외교관)

직무개정에 따라 당원기회관리실 및 일부
정원이 협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개정된바 이
에 따른 다음 사항을 철의하오니 조속히 회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의 정원이 계정되어 운영적의 정원은 감소되고 일반적의 정원은 증원될 경우 기왕 별도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차등

당해 회의의 일반적의 충원시까지 계속 투자 시킬 수 있는지 여부.

(三) (略註 250-2088, 1971. 8. 19.)

1. 총무 290-561(71. 7. 31.)에 따른 회
적의.

2. 규문화 같이 직제개정으로 인하여 별
정직공무원의 정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
환되어 일반직공무원이 결원상태일 때 연단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와 5級이상 公務員에 대한 人事相談 및 苦衷의 審査는 서울特別市·直轄市·道의 人事委員會에서 管掌한다.

③ 人事委員會는 任用權者로부터 人事相談이나 苦衷審査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하고 任用權者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人事相談이나 苦衷審査의 須文·契約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81.4.20 法 3448〕

第68條 (社會保障) ① 公務員이 疾病·負傷·廢疾·分娩·退職·死亡 등에 해를 입은 때에는 本人 또는 그 遺族에게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適切한 資與를 支給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務員의 福利과 利益의 適切·公正한 보호를 위하여 그 對策을樹立·實施하여야 한다.

第9章 懲戒

(懲戒事由) ① 公務員이 다음 종

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懲戒議決의要求를 하여야 하고 同 懲戒議決의 결과에 따라 懲戒處分하여야 한다.

〔改正 81.4.20 法 3448〕

1. 이 法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地方自治團體의 諒例 또는 規則에違反한 때

2. 職務上의 義務(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訓諭된 職務를 포함한다)에 違反하거나 職務를怠慢하였을 때

065 863

② 公務員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③ 他 法의 적용을 받는 公務員이 地方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 이전의 他法에 依한 懲戒事由는 그대로부터 이 法에 依한 懲戒事由가 發生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事由로 이미 懲戒處分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特殊經歷職公務員이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前의 당해 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律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는 그 사유가 發생한 날로부터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懲戒事由가 發生한 것으로 본다. (改正 81.4.20 法 3448)

⑤ 經歷職公務員이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전의 당해 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律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는 그 사유가 發생한 날로부터 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律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가 發生한 것으로 본다. (新設 81.4.20 法 3448)

(懲戒의 種類) 懲戒는 驟免·解任·停職·減俸 및 謹責으로 구분한다.

第71條 (懲戒의 効力) ① 停職은 1月~3月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총는 그 期間中 公務員의 身分은 保有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여 報酬의 3분의 2를 減한다.

〔新設 81.4.20 法 3448〕

② 減俸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報酬의 3분의 1을 減한다.

〔改正 81.4.20 法 3448〕

③ 剎除

④ 謹責은 前邊에 대하여 謹戒하고 驅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이 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청사의 집행은 청사의 검서(제1장 단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81. 7. 18 대령 10391)

3. 아동기자 세운지의 구조에 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노년기자에게 전제적의견서의 사용을 청탁한 벌집 제4호 서탁에 의한 경영에서 부사유설명서를 보통하여 그다.

제11조 (화의의 비공개) ① 제151조, 제152조
에 정한 화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의원회의 실개념 관한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자료 를 관리하는 기관이거나 아니거나

제13조 (법정직종부임에 대한 충격)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정체의 관찰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정체관찰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③ 시 (서울특별시, 청주시·문
포함한
다)의 동장과 읍·면장의 정계에 대하
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고 당해 시·군의 규칙으로 따로 정
할 수 있다

[전등개정 81. 7.18 대령 10391]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징계 절차를 준용한다.

본주기설 81. 7. 18 대령 10391]

제15조 (소청절차)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기적)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지령자치단체의 규
칙으로 정한다.

부록

이 조례는 1963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5.8 내통령령 제6795호>
이 영은 광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76.5.27 대통령령 제8139호>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 한 달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원회
에 제류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하나

부 칙< 1981.7.18 대통령령 제19391호>
이 영은 공포할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봉

총무 215-4672

988-1723

82. 2. 26.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인사과장

제목 7급 별정직 공무원 인상내신 (재보청)



1. 총무 215-1105 (82.1.20) 호의 관련입니다.

2. 당구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다음 직원을 인상 내신하고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신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도봉구 민방위과	별정직 7급 경석두		1943.4.13	81.4.1	동대문구 용두동 129-410

나. 내신사유

- 1)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 및 언쟁
- 2) 후 인적단결 저해
- 3)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
- 4) 금전거래가 극히 복잡 (자금수표등 남발)
- 5) 부인의 술장시 하는등 품위 불순

7월. 꼴.

1982 3 2	762	762
	762	762
	762	762
	762	762

봉 구 청

